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 비교 - A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진숙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A Comparison of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by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in Selected Local Government

Jin-Sook K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상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주제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놀이, 참여권,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the Children's Rights Guarantees among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in a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ways to organize Child Friendly Cities. To this end, I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a municipality based in Seoul, Korea, and discovered certain differences in recognitions of play and leisure, citizen and participation, safety and protec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 education, and housing. Among the six categories, the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recognized that education and housing were relatively well guaranteed whereas citizen and participation was less secure. Child service providers were more negativ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child-friendly community, while parents were more negative about the institutional / cultural environment, such as participation rights. Based on these findings, I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physical environment should refer to the standards of child welfare officers, and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should refer to the parents' standards. Second,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children should be expanded in the community decision-making process.

Key Words : Child Friendly Cities, Child Rights, Play, Participation, Safety, Health and Social Service, Education, Housing

Received 19 September 2017, Revised 27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in Sook Kim
(Hanyang Cyber University)
Email: jskim@hyc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우리는 취약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교육현장에서 좌절하고 배제되는 아동 등 대상과 장소에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부적절함을 연일 보고 들을 수 있다. 각 사안에 따른 각각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표방과 아동권리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 개발도상국은 물론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아동권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구체적 실행전략이 아동친화도시조성이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다는 것은 아동권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2],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권이 보장될 때 가능[3]하여 무엇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1월에 서울시 성북구가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고, 현재 44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4].

아동권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족, 부모,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지만 아동권리보호의 주체는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법을 제정하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권리보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 여부는 지역적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책이나 행정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고, 지역민의 판단도 다를 것이다.

반면,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중요한 요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담보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현

은 직접적으로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관의 아동관계자와 투표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모가 아동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단순히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즉,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주체인 하나 아동권리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인이며, 아동과 가장 가깝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체계가 부모, 아동과 관계된 옹호자, 아동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모와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영역과 설문에 따라 아동권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인권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비교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을 한 개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각 지방정부나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고 [5,6], 아동이 지원받는 서비스에서도 양과 질이 다르며,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의 욕구도 다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인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나 노력의 우선순위가 매우 다양하다 [7]. 이러한 이유로 아동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한 지역을 선정하여 동일조건에 대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친화도시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각국 또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아동친화, 여성친화, 고령친화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그에 다른 고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8,9,10,11].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여러 자치구를 표집하여 일반화하기 보다는 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아동권리인식

아동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보호대상으로서 아동을 보는 인식조차 19세기에서야 확산되었다. 이는 아동이 현재는 무능하지만 미래의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아동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만 있었다[12]. 그 후, 70-80년대부터 아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1990년대 아동권리협약 체결이후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아동권리가 대두되었다[13].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의 기본권리로 정리된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주거지 등 적절한 생활수준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뜻하며, 보호권은 위험과 차별, 착취,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주요 내용이며, 발달권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 놀이 여가, 정보, 문화를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2].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것은 이러한 4대 기본권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놀이와 보건 및 사회서비스, 주거 등은 생존권에, 교육은 발달권에, 안전은 보호권에, 참여는 참여권에 각각 속한다.

그간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아동권리개념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7,9,12], 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13,14],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에서 아동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15,16],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17] 등이 연구된 바 있다. 특히 아동권리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성인의 인식이 많이 비교되었다[18,19]. 이는 권리는 담보해주는 상대가 있어야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고[20], 권리의 동등성이나 구조관계에 따라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21]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의 아동 혹은 청소년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담보해주는 성인과의 인식차이를 보여주지만 아동보다 정책적 의사결정에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성인들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단 3편에 불과하다. 아동친화도시

가 인증되기 전인 2011년에 서울시의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의 경제적 수준차이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서 지역의 아동친화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부모가 사회복지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영역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안전과보호 영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7]. 또다른 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도와 이행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 모두 아동권리 인식 수준은 높았으나 이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2], 한 자치단체의 학부모, 아동, 청소년, 아동권리옹호자를 대상으로 아동4대 기본권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권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23]. 따라서, 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동일한 생활환경을 조건으로 해당 자치구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와 아동관계자들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2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 형성 방법 중 하나가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1) 지역사회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 행사 (2)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 표현 (3) 가정과 사회의 일에 활동가로 참여, (4)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이용, (5)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 (6)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의 안전한 보호, (7) 안전한 거리 보행, (8)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 (9)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 (10)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11) 문화행사나 사회행사 참여, (12) 국적이나 인종, 성별, 소득수준, 장애와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러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유럽네트워크는 유럽연합차원, 국가차원, 지역차원의 주요활동 내용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중 지역차원의 활동내용과 전략은 (1) 의

사결정 과정에서 아동권리 이행력 확보, (2)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정치인, 정책의사결정자의 상호교류, (3) 아동참여촉진, (4) 취약계층 아동보호활동 등이다.

이렇듯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의 물리적 환경과 가치체계이다[2]. 물리적 환경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구성은 그 지역사회가 아동권리와 아동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정책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지역의 아동친화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써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서울 A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중 부모와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해당 조사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척도의 한국어판 부모용과 아동관계자용 설문지에 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인지도 문항이 추가되어 사용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의 책임이 있는 아동권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아부모 106명과 아동관계자 63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2 분석방법

유니세프의 척도는 크게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용 설문지는 놀이와 여가 7문항, 참여와 시민권 4문항, 안전과 보호 5문항, 보건과 사회서비스 11문항, 교육환경 17문항, 가정환경 9문항 등 총 53문항, 아동관계자용 설문지는 놀이와 여가 7문항, 참여와 시민권 6문항, 안전과 보호 18문항, 보건과 사회서비스 12문항, 교육환경 23문항, 가정환경 9문항 등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통된 문항인 놀이와 여가 7문항, 참여와 시민권 4문항, 안전과 보호 5문항,

보건과 사회서비스 11문항, 교육환경 17문항, 가정환경 9문항 등 총 53문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조사의 응답결과는 정규분포를 띠지 않아 비모수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응답결과들이 정규분포를 보이지않은 이유는 문항구성이 전세계 대상으로 비교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한 지역의 응답결과는 주관적 인식이라 할지라도 일정 정도는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다', '아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있다'와 같은 문항은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항들이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응답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정규성분포 검증을 통해 응답결과가 정규성을 띠지 않음을 확인한 후, 부모와 아동관계자로 나누어 빈도분석과 비모수검증 χ^2 를 실시하고 두 집단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절차는 SPSS 23.0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 106명과 아동관계자 63명의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는 부 9명(8.5%), 모 97명(91.5%)이었으며, 20대 1명(1.1%) 30대 59명(63.4%), 40대 32명(34.4%), 50대가 1명(1.1%)로 나타났다. 아동관계자는 남자가 14명(22.2%), 여자가 49명(77.8%)로 나타났으며, 연령분포는 20대가 1명(17.5%), 30대가 9명(14.3%), 40대가 9명(14.3%), 50대가 23명(36.5%), 60대가 11명(17.5%)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parents	Child Service Provider	N(%)
sex	male	14(22.2)	23(13.6)
	female	49(77.8)	146(86.4)
	total(%)	62(100)	169(100)
age	20's	11(17.5)	12(7.7)
	30's	59(63.4)	68(43.6)
	40's	32(34.4)	41(26.3)
	50's	1(1.1)	23(14.7)
	60's	-	11(17.5)
	total(%)	93(100)	63(100)

4.2 놀이와 여가

놀이와 여가의 영역은 접근처 안전한 놀이장소, 지역 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이벤트 축제, 학교수업 외의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장애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부모의 41.0%, 아동관계자의 62.7%가 '전혀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놀이터, 놀 시간 등은 확보되었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아동까지 이용하는 무리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모와 관계자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집 근처 안전한 놀이장소($\chi^2=5.057, p<.05$), 지역 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chi^2=8.194, p<.05$),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chi^2=22.150, p<.001$),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인식($\chi^2 \chi^2=7.416, p<.05$)이었다 <Table 2>. 이 항목들은 아동관계자들이 부모들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lay and leisure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χ^2	p	Cramer's V
contents		Never	Sometimes	Mostly			
Children have a safe place to play right outside their home	parents	6(5.8)	43(41.3)	55(52.9)	5.057	.080*	.175*
	C.S.P	8(12.9)	31(50.0)	23(37.1)			
In the community children have places for play, games or sports	parents	6(5.7)	35(33.0)	65(61.3)	8.194	.017*	0.221*
	C.S.P	9(14.5)	28(45.2)	25(40.3)			
Children have time to play, rest and enjoy themselves	parents	2(1.9)	26(24.5)	78(73.6)	22.150	.000***	.368***
	C.S.P	7(12.1)	29(50.0)	22(37.9)			
The places for play in the community are also designed to be used by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parents	43(41.0)	38(36.2)	24(22.9)	7.416	.025*	.213*
	C.S.P	37(62.7)	12(20.3)	10(16.9)			
There are places in the community where children	parents	15(14.2)	49(46.2)	42(39.6)	.444	.801	-
	C.S.P	11(18.0)	27(44.3)	23(37.7)			

		parents	C.S.P	parents	C.S.P	parents	C.S.P
can be in contact with nature	Children participate in, or observe, festivals and events of cultures and relig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15(14.2)	14(23.0)	57(53.8)	31(50.8)	34(32.1)	16(26.2)
	Children participate in programs, groups or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13(12.3)	7(11.9)	48(45.3)	37(62.7)	45(42.5)	15(25.4)
						2.233	.327
						5.263	.072

* p<.05, ** p<.01, *** p<.001

4.3 참여와 시민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발현하는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 분석된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 '지역내 의사결정이나 기획에 참여', 'TV나 라디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봄', '아동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예산에 대해 의견내기' 등이다. 이 중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은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봤다'만 부모31.1%, 관계자 33.3%로 1/3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문항은 부모는 모두 94% 이상, 관계자는 83% 이상이 참여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chi^2=9.758, p<.01$), 지역내 의사결정이나 기획에 참여($\chi^2=16.565, p<.001$), 아동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예산에 대해 의견내기($\chi^2=15.387, p<.001$)와 같이 세 문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아동에 대한 놀이여가 부분과 달리 부모들이 아동관계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더 없거나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아동관계자들은 부모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입장에서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Table 3> citizen and participation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χ^2	p	Cramer's V
contents		Never	Sometimes	Mostly			
Children and parents help	parents	62(60.2)	35(34.0)	6(5.8)	9.758	.008**	.249**

with projects to change their community	C.S.P	20(36.4)	26(47.3)	9(16.4)			
Children and parents are involved in planning or decisions for the community	parents	73(69.5)	29(27.6)	3(2.9)	16.555	.000***	.320***
	C.S.P	21(36.8)	31(54.4)	5(8.8)			
Children/parents have heard about children's rights on public television or radio	parents	25(23.6)	48(45.3)	33(31.1)	1.109	.574	-
	C.S.P	10(16.7)	30(50.0)	20(33.3)			
Children/parents give their opinion about the budget for programs and services for children	parents	80(76.2)	20(19.0)	5(4.8)	15.387	.000***	.314***
	C.S.P	23(45.1)	20(39.2)	8(15.7)			

* p<.05, ** p<.01, *** p<.001

4.4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에 관해 분석된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음’, ‘자녀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을 인지’, ‘조직폭력 단체로부터 안전’, ‘낯선 자의 남치로부터 안전’,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안전’ 등이다. 이 중에서 ‘차별받지 않음’은 부모의 경우 39.2%만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부모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한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적었다. 아동관계자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항목은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안전’으로 9.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5개의 문항 중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자녀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을 인지 ($\chi^2=25.872, p<.001$)’, ‘조직폭력단체로부터 안전($\chi^2=8.758, p<.05$)’으로 아동관계자들보다 부모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아동보호의 의무가 내 자녀에 국한되어 있는 부모의 입장과 전체 아동까지 광범위한 아동관계자 사이의 시각차는 당연한 것이며, 아동관계자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한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4> safety and protection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contents	Never	Sometimes	Mostly	χ^2	p	Cramer's V
In our community, children are respected regardless of their color, religion, nationality, culture or disabilities	parents 8(7.8)	54(52.9)	40(39.2)	4.815	.090	-
	C.S.P 11(18.0)	33(54.1)	17(27.9)			
If a child is out of home and in danger or at risk, someone will come to help them	parents 2(1.9)	30(28.3)	74(69.8)	25.872	.000***	.395***
	C.S.P 6(10.0)	36(60.0)	18(30.0)			
Children are protected from gangs/armed groups*	parents 6(5.7)	32(30.5)	67(63.8)	8.758	.013*	.233*
	C.S.P 11(19.6)	19(33.9)	26(46.4)			
Children feel protected from a stranger taking them away	parents 15(14.3)	35(33.3)	55(52.4)	21.786	.000	.367***
	C.S.P 19(33.3)	29(50.9)	9(15.8)			
Children feel safe from violence and abuse	parents 15(14.2)	37(34.9)	54(50.9)	30.835	.000	.427
	C.S.P 22(34.9)	35(55.6)	6(9.5)			

* p<.05, ** p<.01, *** p<.001

4.5 보건과 사회서비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아동보건과 발달에 관한 서비스, 병원, 정신보건/심리서비스, 응급치료기관, 출생신고, 돌봄기관, 예방접종, 식량지원, 안전한 공중화장실, 쓰레기와 오염수, 매연이나 악취 등 총 11개 문항이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신보건서비스, 안전한 공중화장실, 쓰레기, 매연과 악취 등의 항목은 20%이상의 응답자가 전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치료받을만한 병원, 출생신고, 예방접종에 관한 항목은 80%이상의 응답자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병원 ($\chi^2=23.987, p<.001$)과 예방접종($\chi^2=15.212, p<.001$)에 있어 부모와 아동관계의 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아동관계자들이 병원과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서비스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Table 5>).

<Table 5> Health and Social Service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contents	Never	Someti mes	Mostly	χ^2	p	Cramer's V	
There is a place where parents can get advice about their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parents	15(14.2)	52(49.1)	39(36.8)	2.664	.264	-
	C.S.P	7(12.1)	36(62.1)	15(25.9)			
There is a place in the community where parents and children can go for health check-ups and when sick	parents	1(0.9)	10(9.4)	95(89.6)	23.987	.000	.378***
	C.S.P	7(11.3)	19(30.6)	36(58.1)			
Parents and children know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parents	30(28.3)	41(38.7)	35(33.0)	2.303	.316	-
	C.S.P	13(22.0)	30(50.8)	16(27.1)			
There are emergency care facilities that parents can easily go to and use when their children get hurt or fall very ill	parents	13(12.3)	29(27.4)	64(60.4)	1.170	.557	-
	C.S.P	6(9.5)	22(34.9)	35(55.6)			
Children are registered at birth	parents	3(2.9)	14(13.3)	88(83.8)	.215	.898	-
	C.S.P	1(1.7)	8(13.6)	50(84.7)			
There is a place or person where young children can be taken care of if parents need it	parents	21(19.8)	36(34.0)	49(46.2)	5.752	.056	-
	C.S.P	12(21.1)	29(50.9)	16(28.1)			
Children receive all of the immunizations they need	parents	4(3.8)	4(3.8)	98(92.5)	15.212	.000	.302***
	C.S.P	3(4.9)	14(23.0)	44(72.1)			
There are places where families can get food when needed	parents	18(19.4)	52(57.0)	22(23.7)	5.287	.071	-
	C.S.P	6(9.7)	32(51.6)	24(38.7)			
There are public toilets which children can use safe	parents	26(34.0)	52(50.0)	17(16.0)	3.592	.166	-
	C.S.P	21(33.9)	24(38.7)	17(27.4)			
The community is free from garbage and dirty water	parents	25(23.8)	58(55.2)	22(21.0)	.924	.630	-
	C.S.P	14(22.6)	31(50.0)	17(27.4)			
The air is clean, smoke-free and stench-free	parents	34(32.4)	52(50.5)	18(17.1)	5.766	.056	-
	C.S.P	10(16.1)	36(58.1)	16(25.8)			

* p<.05, ** p<.01, *** p<.001

4.6 교육환경

교육환경과 관련된 문항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던 문항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부모 97.2%, 관계자 90.2%)이었고,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낸 문항은 장애아동의 학교에 대한 접근성(부모 21.0%, 관계자 14(25.5%)였다.

교육환경의 영역은 많은 문항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교육환경에 관해 분석된 17개 문항 중 14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시설의 운영시간의 편리($\chi^2=10.176$, $p<.01$), 남녀차별 없음($\chi^2=37.065$, $p<.001$), 학용품과 책($\chi^2=32.380$, $p<.001$), 교사의 관심($\chi^2=23.481$, $p<.001$), 교사의 경청($\chi^2=22.429$, $p<.001$), 놀거나 쉴 자유시간($\chi^2=28.935$, $p<.001$), 충분한 물($\chi^2=16.625$, $p<.001$), 교육시설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chi^2=19.405$, $p<.001$), 인종/종교/국적/문화권에 관계없이 존중받음($\chi^2=29.510$, $p<.001$),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chi^2=21.418$, $p<.001$), 교육시설과 지역도서관 이용가능($\chi^2=13.646$, $p<.01$), 차별($\chi^2=40.318$, $p<.001$), 따돌림($\chi^2=47.793$, $p<.001$) 등의 항목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육환경보다 아동관계자가 인식하는 교육환경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ducational Resource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contents	Never	Someti mes	Mostly	χ^2	p	Cramer's V	
Children go to school	parents	1 (0.9)	2 (1.9)	103 (97.2)	4.035	.133	-
	C.S.P	1(1.6)	5(8.2)	55(90.2)			
Parents have access to affordable schools in places close to their home	parents	15 (14.3)	36(34.3)	54(51.4)	1.716	.424	-
	C.S.P	10 (16.4)	26(42.6)	25(41.0)			
The school schedule is convenient to families	parents	9(8.5)	30(28.3)	67(63.2)	10.176	.006**	.249**
	C.S.P	6(10.3)	30(51.7)	22(37.9)			
Boys and girls are treated the same way in school	parents	1(1.0)	13(12.4)	91(86.7)	37.065	.000	.474***
	C.S.P	2(3.3)	33(55.0)	25(41.7)			
Children have affordable books, paper,	parents	1(0.9)	10(9.4)	95(89.6)	32.380	.000	.444***
	C.S.P	1(1.6)	5(8.2)	55(90.2)			

pencils and other school supplies in school/preschool	C.S.P	1(1.7)	28(48.3)	29(50.0)			
Children receive enough attention from their teacher when they need it	parents	1(1.0)	21(20.0)	83(79.0)	23.481	.000***	.382***
	C.S.P	2(3.6)	31(55.4)	23(41.1)			
The ideas of children are listened to by teachers in school	parents	1(1.0)	24(22.9)	80(76.2)	22.429	.000***	.372***
	C.S.P	5(8.8)	29(50.9)	23(40.4)			
There is free time in school for children to play games and sports, rest, and spend time with friends	parents	1(0.9)	16(15.2)	89(84.0)	28.935	.000***	.417***
	C.S.P	9(15.0)	23(38.3)	28(46.7)			
Children have enough good water in school for drinking and washing	parents	1(0.9)	10(9.4)	95(89.6)	16.625	.000***	.316***
	C.S.P	2(3.3)	20(33.3)	38(63.3)			
The toilets in school are clean and the children can use them easily and safely	parents	1(1.0)	10(9.5)	94(89.5)	19.405	.000***	.342***
	C.S.P	3(4.9)	21(34.4)	37(60.7)			
In school all children are respected regardless of their color, religion, culture and physical condition	parents	1(1.0)	20(19.0)	84(80.0)	29.510	.000***	.425***
	C.S.P	7(12.1)	28(48.3)	23(39.7)			
In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respected and given equal treatment	parents	6(6.8)	22(25.0)	60(68.2)	21.418	.000***	.387***
	C.S.P	15(27.3)	23(41.8)	17(30.9)			
Children use the school or community library	parents	2(1.9)	9(8.5)	95(89.6)	13.646	.001**	.284**
	C.S.P	3(4.8)	18(28.6)	42(66.7)			
At school, children are disciplined without being physically hurt	parents	1(1.0)	11(10.5)	93(88.6)	40.318	.000***	.499***
	C.S.P	6(10.5)	27(47.4)	24(42.1)			
Parents/children have opportunities to give their opinion regarding school decisions	parents	5(5.1)	49(49.5)	45(45.5)	.165	.921	-
	C.S.P	3(5.3)	30(52.6)	24(42.1)			

Children feel safe from bullying in school	parents	2(2.0)	15(14.7)	85(83.3)	47.793	.000***	.537***
	C.S.P	7(12.3)	33(57.9)	17(29.8)			
Schools are accessibl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ents	26(32.1)	38(46.9)	17(21.0)	4.246	.120	-
	C.S.P	9(16.4)	32(58.2)	14(25.5)			

* p<.05, ** p<.01, *** p<.001

4.7 주거환경

주거환경 영역의 문항은 주로 주거상황, 물리적 가정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총 9개 문항으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씻을 수 있는 물, 깨끗한 공기, 전기시설, 쾌적한 집,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 자녀를 위한 공간, 집안에서의 안전함 등이다. 이 문항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항목은 집에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었으며(부모 94.3%, 아동관계자 75.4%가 긍정),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은 항목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부모 50.5%, 아동관계자 50.5%)이었다. 또한, 이 항목은 부모나 아동관계자나 인식에 차이가 없었으나, 깨끗한 물($\chi^2=12.648, p<.01$), 씻을 수 있는 물($\chi^2=12.449, p<.01$), 깨끗한 공기($\chi^2=7.887, p<.05$), 전기시설($\chi^2=8.174, p<.05$), 쾌적한 집($\chi^2=5.9793, p<.05$),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chi^2=5.979, p<.05$), 자녀를 위한 공간($\chi^2=6.319, p<.05$), 집안에서의 안전함($\chi^2=15.206, p<.001$)의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7>).

<Table 7> Housing

		(parents N=106, Child Service Provider(C.S.P) N=63)				χ^2	p	Cramer's V
contents		Never	Sometimes	Mostly				
Children have enough safe water to drink at home	parents	1(0.9)	5(4.7)	100(94.3)	12.648	.002**	.275**	
	C.S.P	3(4.9)	12(19.7)	46(75.4)				
Children have a clean toilet they can use at home or nearby	parents	8(7.5)	25(23.6)	31(50.0)	5.928	.052	-	
	C.S.P	8(12.9)	23(37.1)	31(50.0)				
There is enough water for washing at home	parents	4(3.8)	5(4.7)	97(91.5)	12.449	.002**	.272**	
	C.S.P	2(3.2)	14(22.6)	46(74.2)				
The air in homes is healthy for	parents	4(3.8)	36(34.0)	66(62.3)	7.887	.019*	.216*	
	C.S.P	9(14.3)	25(39.7)	29				

children and it is free from smoke and pollution				(46.0)			
Houses have electric light	parents	1(0.9)	5(4.7)	100 (94.3)	8.174	.017*	.221*
	C.S.P	1(1.6)	11(18.0)	49 (80.3)			
Houses provide adequate shelter for all weather conditions	parents	4(3.8)	23(21.7)	79 (74.5)	5.979	.050*	.189*
	C.S.P	2(3.3)	24(39.3)	35 (57.4)			
Families have homes they can afford which cannot be easily taken away	parents	7(6.7)	15(14.3)	83 (79.0)	6.319	.042*	.196*
	C.S.P	4(6.8)	18(30.5)	37 (62.7)			
Homes have enough space for children	parents	4(3.8)	16(15.2)	85 (81.0)	12.855	.002**	.279**
	C.S.P	4(6.7)	23(38.3)	33 (55.0)			
Children feel safe at home	parents	1(0.9)	13(12.3)	92 (86.8)	15.206	.000***	.302***
	C.S.P	1(1.6)	23(37.7)	37 (60.7)			

* p<.05, ** p<.01, *** p<.001

4.8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chi^2=37.765$, $p<.001$)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chi^2=19.458$, $p<.001$)를 묻는 질문에서도 부모와 관계자의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우 60%이상이 들어만 보았다고 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60%이상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아동관계자는 대부분이 들어보거나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동관계자의 경우에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7.9%로 적지 않은 수의 아동관계자가 각 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정책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Table 8> The recognition of Children Friendly Cities

		[unit: average(SD)]			χ^2	p	Cramer's V
contents		don't know	have heard	know enough			
United Nations Convention	parents	33(31.7)	63(60.6)	8(7.7)	37.765	.000***	.478***
	C.S.P	4(6.6)	29(47.5)	28(45.9)			

on the Rights of Children							
Children Friendly Cities	parents	64(62.1)	34(33.0)	5(4.9)	19.458	.000***	.344***
	C.S.P	17(27.9)	34(55.7)	10(16.4)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인권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의 아동권리 영역에 대한 인식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친화도시의 이해에 대해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된 영역 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은 긍정적인 답변이 50%이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6개 영역에서 가장 덜 준비되었다고 인식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놀이와 여가의 영역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지역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인식이었다.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이벤트 축제, 학교수업 외의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 '지역내 의사결정이나 기획에 참여', 'TV나 라디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봄', '아동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예산에 대해 의견내기' 등으로, 이 중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은 TV나 라디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봤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는 자녀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을 인지, 조직폭력단체로부터 안전, 납치로부터 안전 등 3문항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치료받을만한 병원, 예방접종에 관한 인식 등 2개 문항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아동관계자

들이 병원과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서비스에 있어서 더 미흡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동보건과 발달에 관한 서비스, 정신보건/심리서비스, 응급치료기관, 출생신고, 돌봄기관, 식품보장, 안전한 공중화장실, 쓰레기와 오염수, 매연이나 악취 등 총 11개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환경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나, 부모와 아동관계자간의 인식차이가 많은 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육시설의 운영시간의 편리, 남녀차별 없음, 학용품과 책, 교사의 관심, 교사의 경청, 놀거나 쉴 자유시간, 충분한 물, 교육시설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인종/종교/국적/문화권에 관계없이 존중받음,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 교육시설과 지역도서관 이용가능, 체벌, 따돌림 등의 항목에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가 아동관계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영역 역시 전체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아동관계자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씻을 수 있는 물, 깨끗한 공기, 전기시설, 쾌적한 집,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 자녀를 위한 공간, 집안에서의 안전함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A지자체의 부모와 아동관계자가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환경 조성 실태는 서로 차이가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영역은 아동관계자들이 부모보다 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은 부모들이 아동관계자보다 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객관적으로 기준 설정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 영역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제도적/문화적 환경은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제공자 입장인 아동관계자보다 서비스 이용자 입장인 부모가 참여기회가 적다고 느끼는 것은 이용자중심의 정책이 더 필요하며, 동시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를 강조하는 결과이다. 최근의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24]에 따라 많

은 아동권리 연구가 아동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으며[25,26,27], 논의의 초점이 당사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당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정책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동을 대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요보호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함에 있어 아동과 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일하는 성인들이라는 세 주체들의 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객관적인 지표와 응답된 결과 간에 격차가 있는 문항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 실정에 맞는 심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보다는 이용가능성에 더 초점이 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서비스나, 아동상담소, 비정기 돌봄기관 등이 있지만, 대기자가 많거나 이용가능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면 해당 서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공원, 문화, 놀이시설 등의 경우에도 유료화된 곳이 많아지면서 빈곤아동이나 가정은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존재해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28]. 또한, 쓰레기나 악취 등의 위생적인 환경 역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응답되기보다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따라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와 체감도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지표 중 하나인 ‘마시거나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에 대해 조사지역의 수도물은 깨끗하고 공급이 잘 되고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영역과 지표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간의 차이를 보거나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 실천 합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표본의 대표성이다. 먼저 부모의 응답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표집하여 전연령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동이 직접 응답하기 어려워 부모가 아동을 대신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어린 연령의 부모가 아동의 환경과

안전에 민감하다는 점[29]에서 연구의 유용성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는 특히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설문문항으로 조사된 자료를 2차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을 포함하고 좀 더 지역에 적합한 문항으로 아동친화적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ttp://childfriendlycities.org/wp-content/uploads/2013/04/pdf/CFCI-fact-sheet-14-sept-final.pdf> 2017. 8. 15.
- [2] S. K. Park, "Children's Rights and Child Friendly Cit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pp.62-72, 2016.
- [3] W. S. Kim,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485-491, 2017.
- [4] <http://childfriendlycities.kr/map> 2017. 9. 1
- [5] D. Maeng, "Seoul's Spatial Characteristics : Local Disparity Analysis in the Built Environ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9.
- [6] C. Lee & H. Kang, "Regional Disparities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in Gyeonggi Provinc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14 No.1, pp.173-187, 2017.
- [7] S. Hong & J. Lee,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5, No.1, pp.149-172, 2011.
- [8] T. W. Sim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Wrongs to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8, No. 1, pp.1-13, 2000.
- [9] J. S. Kim, Y. J. Jang. "Assessment of children's rights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aris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83-96, 2017.
- [10] I. Kang, "Women's City and Satisfaction Level of Local Life on Gender perspective: A Case of Changwon Cit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32, pp.247-278, 2013.
- [11] K. Nah, S. Sung, Y. Jeon & E. Lee, "A Study on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for Designing Aging Friendly City through The Cas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6, pp.61-69, 2017.
- [12] J. Y. Lee & S. R. Lee,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n the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2. No. 1, pp.25-41, 1998.
- [13] O. K. Hwang. "A Stud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Child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0, No.4, pp.609-631, 2016.
- [14] Z. Park. "A Report on the Process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n South Korea"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6, No, 1. pp.181-208, 2010.
- [15] S. Lee. "A Study on perception of security of children's rights in their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11, pp.55-84, 2006.
- [16] M. S. Lee. E. Lee. "Levels of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arents and Caregiver in Daycare Center toward the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7, No. 2, pp.265-284, 2013.
- [17] H. Lee., Y. Ko., C. Kim., H. Jang., M. Jeon., I. Cho. and O. Hwang. "The Current Status of Child Rights Training for Persons Who Work with or for Children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Focusing on Systematization of Child Rights Train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8, No.3, pp.387-409, 2014.
- [18] B. N. Kim., H. S. Kwon. and C. G. Ha, "The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Social Worker and Users at Community Child Center -Using an IPA

- Analysis" Social Science Review. Vol.31, No.2, pp.293-316, 2015.
- [19] Y. N. Kim, "Participation rights for youth age parents - teachers - youth the difference between start-year recogni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10, No.3, pp.353-381, 2010.
- [20] H. J. Cho, "Rights Odyssey". GyoYangIn, 2015.
- [21] D. Chun, N. Kim & J. Seo,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8, pp.11-18, 2016.
- [22] M.Lee & E. Lee, "Levels of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arents and Caregiver in Daycare Center toward the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7, No.2, pp.265-284, 2013.
- [23] H. You, S. Kwon, S. Kang & J. Byun "The Direction to the Child-Friendly City Infra-Building of O city Based on the Child-Friendly Assessment Tool" Vol.12, No.1, pp.159-192, 2017.
- [24] J. Han, H. Bae & H. Lim,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through Analysis of Service Cas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3, pp.1-7, 2017.
- [25] E. Y. Chae, J. Y. Le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0, No. 3, pp.347-366, 2016.
- [26] E. Oh, I. Chung,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Children: Ranked Children's Learning of How to Live Together",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2, pp.217-246, 2015.
- [27] M. Ham, H. Kang, "The Effect of the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Style on the Perception and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16, No. 4, pp.565-589, 2012.
- [28] E. Kwak & M. Chung, "Hom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of Children: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and Settlement Character",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18, No.3, pp.493-505, 2007.
- [29] S. Kim, J. M. Lee and J. Y. Min, "Parents' Perception and Behaviors regarding Child Safety Acci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rach, Vol.23, No.1, pp.91-100, 2017.

김진숙(Kim, Jin Sook)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10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지역복지
- E-Mail : jskim@hycu.ac.kr